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의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하자보수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乙이 그 방수공사를 맡아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丙을 고용하여 방수공사를 하다가 丙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칭한다)를 제기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음이 밝혀졌다면,

1. 丙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2.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3. 丙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일절청구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丙에게는 방수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에게 “아무나 방수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는 안전하게 방수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乙에게는 이와 같은 丙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한 고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4.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甲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내가 아닌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丙의 나에게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실제로 甲에게 丙에 대하여 이미 변제

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甲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5.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丙의 과실은 30%로 인정되었고, 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丙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2】

甲은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그가 소유한 A리 산132 임야 1,200㎡(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부동산은 A리 소재인바, 'A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현장 답사 후 매수하기로 하고, 2003. 5. 10.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은 실수로 역시 乙이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이 동일한 산133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2003. 6. 1. 산133 임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2003. 6. 10. 산132 임야에 분묘 2기를 개설하고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를 심어 두었으며, 그 상태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각 설문에 답하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판례에 의할 것).

1. 甲은 2023. 1.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132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乙을 상대로 “200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답변서에서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하였고, 그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 甲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제1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甲은 산133 임야가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에 관하여 2023. 1. 2. 처남인 甲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자 甲의 채권자 丙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산133 임야에 관한 2023. 1. 2.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甲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23. 5. 10.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甲이 2023. 1. 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인정되었다. 丙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제1, 2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乙은 2023. 2. 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丙과 장남인 丁1, 차남인 丁2 및 장남 丁1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丁1과 丁2는 2023. 4. 5. 상속을 포기하였고, 丙은 산132 임야가 乙의 소유로 등기된 것을 알고 2023. 4. 10. 이를 戊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戊가 산132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10점)

4. (제3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은 뒤늦게 이를 알고 2023. 6. 10. 戊를 상대로 산132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한다. 甲이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5. (제3, 4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戊는 甲의

청구를 받고 2023. 4. 10. 이후 산132 임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戊의 주장은 타당한가? (5점)

형 법

【문 1】

甲은 2013. 12.경 A로부터 A 소유인 ○○○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3.경 위 아파트를 甲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A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甲은 2015. 8. 6.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억 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B에게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 2】

甲은 乙과 합동하여 영업을 마친 주점을 대상으로 주점 내에 있는 양주를 훔치기로 하고서 그 범행에 필요한 무전기, 플라스틱 바구니 3개 정도를 준비한 후 장소를 물색하였다. 甲, 乙은 2003. 12. 9. 07:30경 A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乙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불상의 방법으로 주점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임페리얼 등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乙을 수상하게 여기고 A가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가 甲을 붙잡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있던 A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문 3】

甲은 2022. 1. 24.과 2022. 1. 26.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기자인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B와 식사하기에 앞서 또는 식사를 마친 후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 甲은 위 출입에 A의 승낙을 받았으나, A는 甲의 위와 같은 출입목적을 알지 못하였다. 甲의 A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0점)

형사소송법

【문 1】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1-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십시오. (10점)

1-2. 이때 항고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5점)

【문 2】

甲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 전 甲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甲은 제1회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십시오. (5점)

【문 3】

항소법원은 2019. 5. 27. 제1사건(업무방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2019. 8. 7. 제2사건(사기)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항소법원은 2019. 8. 4.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제2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2019. 8. 24. 병합을 이유로 제1사건의 제1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사건의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였다. 이때 항소법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5점)

【문 4】

피고인은 제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2017. 3. 10.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2017. 3. 12. 국선변호인에게, 2017. 3. 13. 피고인에게 각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7.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항소법원은 2017. 3. 24.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고,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은 2017. 5. 21.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은 2017. 7. 3. 위 항소이유서가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다음 제출되었고,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십시오. (15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르고, 대법원 판결의 의견이 나뉠 경우 다수의견에 따라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문 5】

준항고인은 준항고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항고 절차에서 압수·수색 처분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준항고 취지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소속 검사들이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30.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준항고법원은 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에 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준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준항고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상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

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2019. 4. 1. 甲은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0. 4. 1.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

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

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4.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인데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5.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서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甲의 항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부동산등기법

【문 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은 X토지와 Y토지 및 W건물(각 부동산의 등기소 관할은 동일함)의 소유명의인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1.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의 甲은 성년인 자녀 A, B, C, D, E를 두고 있다. 甲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언의 형식은 갖추).

- 다음 -

“나의 재산 중에서 W건물은 乙(사회복지법인)에게 이전(유증)한다.” 乙이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W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할 때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단, 등기필정보는 멸실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음). (35점)

2. X토지와 Y토지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丙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로되어 있다. 아래 각 설문에서 X토지와 Y토지에 대한 합필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 丙의 근저당권등기의 목적이 X토지 전부와 Y토지 1/2지분인 경우 (7점)

나. 丙의 근저당권등기의 목적이 X토지와 Y토지 전부이고, X토지에 대한 요역지지역권등기가 경로된 경우 (8점)